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PALAZZO DEL FREDDO



[정보공개서등록번호: 20120100412]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2.08.16]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1.25]

www.ipalazzo.com
jsw@pdfcorea.com

빨라쫄 델 프레도(Palazzo Del Freddo)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빨라쫄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주식회사 빨라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 공개서를 제공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 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귀하께서 가맹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주소] 140-78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72길 3
(남영동) 2층 (주) 빨라쫄

[대표전화] 02-709-7814

[대표FAX] 02-709-7819

[담당부서] (주) 빨라쫄 영업팀

[담당부서 전화] 02-709-7817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 첨

- 젤라또, 물품 발주서
- 메뉴 리스트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원·부재료
-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 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식회사 빨라쫄	빨라쫄 델 프레도 외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2길 3 2층(남영동)			
	설립일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 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2.12.18	2002.12.18	2002. 12.18	김용선	02-709-7818	02-709-7819
	법인등록번호	110111-2676257		사업자등록번호		211-87-26090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 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김용선	빨라쫄 델 프레도 외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2길 3 2층(남영동)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2023.3 ~ 현재		김용선	02-709-7818	02-709-7819
관계	이름/상호	사용 브랜드	주소		
사용인 (임원)	김형근	빨라쫄 델 프레도 외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2길 3 2층(남영동)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2008.5 ~ 현재		김용선	02-709-7818	02-709-7819
관계	이름/상호	사용 브랜드	주소		
사용인 (임원)	윤도성	빨라쫄 델 프레도 외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2길 3 2층(남영동)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2011.08 ~ 현재		김용선	02-709-7818	02-709-7819
관계	이름/상호	사용브랜드	주소		
사용인 (임원)	김준열	빨라쫄 델 프레도 외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72길 3 2층(남영동)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2021.04 ~ 현재		김용선	02-709-7818	02-709-7819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 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 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합병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인수함	해태제과		2008.4.30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2길 (남영동)	신정훈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빨라쥬 델 프레도] 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빨라쥬 델 프레도	얼음 궁전
상 호	주식회사 빨라쥬	
상표(서비스표)	 PALAZZO DEL FREDDO	서비스 표 등록번호 476060
광 고	현재 없음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5,919,488	5,416,751	502,737	2,991,677	-1,497,133	-1,689,588
2022년	4,913,849	2,804,009	2,109,840	3,970,792	-1,254,894	-1,392,896
2023년	4,610,811	3,633,731	977,080	4,302,852	-862,724	-1,132,760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에서 추정 한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 전체 매출액의 100%입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용선	대표이사	2010.10 ~ 2014.12	해태 부서장	구매 총괄
			2015.01 ~ 2019.12	해태 부서장	인사총무 총괄
			2020.01 ~ 2023.03	해태 부서장	경영혁신
			2012.08.16 ~ 현재	대표이사	가맹사업 운영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김형근	이사	2003.01 ~ 2023.02	해태재무팀 팀장	자금조달
			2023.3~현재	해태경영혁신 부서장	경영혁신
			2012.08.16 ~ 현재	이사	가맹사업 운영

	윤도성	감사	2011.08~ 현재	해태 재무 이사	자금 총괄
			2012.08.16 ~ 현재	감사	가맹사업 운영
	김준열	사내이사	2021.4~ 현재	해태 경영기획 부서장	기획 총괄
			2012.08.16 ~ 현재	이사	가맹사업 운영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 년 12 월 31 일	3	1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해당사항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PALAZZO DEL FREDDO의 상호 및 로고사용에 대한 국제상표권은 이탈리아 PALAZZO DEL FREDDO Giovanni Fassi 본사(소유자)의 소유로 되어있으며 상표권에 대한 등록 만료일 및 갱신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②	등록 및 등록 신청 여부 (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상표권)	PALAZZO DEL FREDDO 상표사용권에 대한 권한	2002.10.24 출원 2004.01.27 등록	출원 40-2002 -0048875 등록 40-0577733 -0000	PALAZZO DEL FREDDO Giovanni Fassi s.r.l	2024년 3월 16일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I. 가맹본부의 [빨라조 델 프레도]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02 년 12 월 18 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1996년 5월 23일)

2. 빨라조 델 프레도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 피디에프코리아	PALAZZO DEL FREDDO	송준형	2008.5.13~2011.2.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72 길 3 2 층(남영동)
(주) 피디에프코리아	PALAZZO DEL FREDDO	박재구	2011.2.24~2012.7.1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72 길 3 2 층(남영동)
(주) 빨라조	PALAZZO DEL FREDDO (빨라조 델 프레도)	박재구	2012.7.12~2014.12.3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72 길 3 2 층(남영동)
(주) 빨라조	PALAZZO DEL FREDDO (빨라조 델 프레도)	김경호	2019.9.4 ~2023.03.0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72 길 3 2 층 (남영동)
(주) 빨라조	PALAZZO DEL FREDDO (빨라조 델 프레도)	김용선	2023.03.01~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72 길 3 2 층 (남영동)

3. [빨라조 델 프레도] 업종

영업표지	업종	
빨라조 델 프레도	대분류	소분류
	기타 외식	젤라또 아이스크림 빙수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빨라조 델 프레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2	16	16	20	12	8	21	15	6
서울	13	4	9	9	4	5	7	3	4
부산	2	2	-	2	2	-	2	2	-
대구	3	2	1	3	2	1	4	3	1
인천	4	2	2	-	-	-	1	1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1	1	-	1	1	-	1	1	-
경기	7	3	4	4	2	2	3	2	1
강원	1	1	-	-	-	-	-	-	-
세종	-	-	-	-	-	-	-	-	-
충북	-	-	-	-	-	-	2	2	-
충남	-	-	-	-	-	-	1	1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1	1	-	1	1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빨라조 델 프레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증감
2021년	19	3	6			16	-2
2022년	16	-	4	-	-	12	-4
2023년	12	6	3	-	-	15	+2

6. [빨라조 델 프레도]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사항 없음

7. 전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당	하한	면적 3.3m2당	
전체	15	175,071	57,596	826,621	462,347	48,625	11,007	12곳 산정
서울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부산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대구	3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인천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경기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강원	-	-	-	-	-	-	-	-
세종	-	-	-	-	-	-	-	-
충북	2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충남	1	해당없음	-	-	-	-	-	5곳 미만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당사에서 추정 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x 2.86]

단, POS 상에 가맹점의 총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POS 매출을 사용함.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 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 35% 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 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 영업팀으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빨라조 델 프레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빨라조 델 프레도]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도	15	1230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전년도에 [빨라조 델 프레도]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손익계산서상 광고선전비	2023연중	21,462	21,462	-
광고/판촉	손익계산서상 광고선전비	2023연중	21,462	21,462	-

11. 가맹금 예치 기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해당사항 없음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보증보험으로 대체)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
피보험인(보험계약자)	(주)빨라조	가맹본부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 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5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빨라쫄 텔 프레도]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 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일부예치함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	-	-
계약금	5,5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영업을 시작하면 가입비로 대체
가입비	3,3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반환시 당사기준에 의한 위약금 공제
교육비	1,1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교육시작 1일 전 계약해지시	개점필수사항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진행비	1,100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반환되지 않음	진행 관련 비용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해당)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 계	10,000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	-
물품보증금	10,000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본사가 공급한 제품, 물품, 인력 등 미결제 등 귀책사유	귀책사유 제외분 계약해지시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최초 가맹금, 보증금은 일정기간동안 은행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예치를 하여야 하나, 규정상서울 보증보험의 피해자 보상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예치금으로 대체합니다. 이에, 귀하는 보증보험의 증권을 수령 후 절차에 따라 빨라조의 계약 절차에 따라 가맹비 및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합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 대상	금 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 고
총 계		(78,650~92,000)	(23,833~27,878)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기간 합의		
주방기기, 용품	가맹본부	33,000~46,000	(10,000~13,939)	설비입고 7일 전	미공급 내역	가구 품목 및 수량에 따라 추가 부담
인테리어 (점포 내외장공사)	가맹본부	38,500	3,850	계약금50% (1일) 잔금50% (개점전 1일)	미시공 범위	33.058 m² 초과시 3.3 m² 당 추가 부담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5,500		설비결제 동시	미공급 내역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가맹본부	1,650~2,000			없음	운임 및 기타 소모 잡비

* 기준 평수 : 33.058평방미터(m²)/10평

* 비지정업체 선정 시

감리비	(주)빨라조	3,300	공사완료 동시	비지정업체
-----	--------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02-709-7817)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빨라쵸 델 프레도]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6,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220천원	매월 10일	반환안됨		매월 말일 정산
광고 분담금	(주)빨라쫄	50%				
교육훈련비	(주)빨라쫄	1,500	교육 실시 3일전			교육 필요시 지급
점포환경개선 비용	협력업체	본사부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리모델링 공사 실시 5일 이전			계약갱신 리모델링계획 수립시 제30조참조
POS 사용료	협력업체	구입 2,500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부담금		해당없음				
지연이자	(주)빨라쫄	0%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감독(영업 중)

가맹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점포의 경영상태 및 진단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양식에 기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가) 월, 일 매출

나) 재고 관리 원장

다) 회계원장

라) 위생 점검표

상기 내용은 가맹본부의 슈퍼바이저 및 본부가 인정하는 관리직원의 요청시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단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

는 가맹점 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빨라쥬 델 프레도]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인인 귀하가 (주)빨라쥬(빨라쥬 델 프레도)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별도로 양수인은 가맹본부에 교육비와 보증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가맹 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규 양수자가 신규계약을 희망할 경우 신규가맹계약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4~25]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빨라쥬 델 프레도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계약종료 직후(3일 이내) 기존 간판 및 사인물은 반드시 제거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주)빨라쥬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빨라쫄 델 프레도]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 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빨라쫄 델 프레도]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1) 당사는 [빨라쫄 델 프레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1) 당사가 [빨라쫄 델 프레도]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상품·용역, 거래 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본사 지정 메뉴 (메뉴 및 가격 별첨)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해당사항 없음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가맹본부가 지정한 모든 메뉴 및 용역	가맹본부 지정가격	변동시 구두 및 서면	별첨(메뉴가격)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젤라또 또는 아이스크림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빨라쥬 델 프레도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500M	별지(지도)에 영업지역 표시
특수상권	별지(지도)에 영업지역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동의를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 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빨라쫄 델 프레도’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빨라쫄 델 프레도』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	------	------	----------

가맹점	해당없음
대리점	
일반소매점	
기타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해당없음			
홈쇼핑				
권유판매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7)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 구분된 각각의 합계액이 기재된 매출액 자료 -오프라인 판매 100%

(2)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비중이 기재된 자료
-오프라인 판매 100%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74	26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빨라쫄 텔 프레도]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60일 전 가맹 본부는 가맹 사업자에게 계약 만료 사실을 사전 통보 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에 대해 가맹 사업자가 연장을 희망하거나 답변이 없을 경우 가맹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며 자동 갱신의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 15일 이 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 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3조1- 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위생교육·디자인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3조1- 2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3조1- 3항
○ [빨라쥬 델 프레도]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3조1- 4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3조1- 5항
○ 가맹점 사업자의 일신상 또는,파산 신청,강제집행절차/회생절차중인 경우	33조1- 6항
○ 가맹점 사업자 점포에 개,보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가맹본부의 시정 요청을 거절 하였을 경우	33조1- 7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일반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사업자가 개점 및 개점시간 항목과 관련해 개점 일자를 3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34조 3-1항
-가맹사업자의 설치 제한 지역내에 가맹본부가 홍보차원의 특수한 매장(백화점,할인점,쇼핑몰과 행사 매장 등)의 출점을 불복하거나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34조 3-2항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상표 및 상호를 훼손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34조 3-3항
-가맹사업자가 점포 운영상의 준수사항 (운영 매뉴얼) 규정에 불복하거나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34조 3-4항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정한 상품의 공급과 관리 및 구입강제품목의 지정 위 1항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4조 3-5항
-가맹사업자가 권리의무의 양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4조 3-6항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품의 대금 지급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4조 3-7항
-가맹사업자가 가맹금의 지급을 준수하지 않고 해태한 경우	34조 3-8항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 관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위반할 경우	34조 3-9항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 당시부터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나 중요정보를 유출하는 등 가맹본부의 본 사업을 훼손할 목적으로 본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하는 경우	34조 3-10항
---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15 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 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즉시 계약 해지사유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10.가맹계약서상의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가맹본부와 사전 합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담보 제공등을 이유로 처분을 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협의 후 필요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거나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본 사항은 상호적용 된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사항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2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3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영업팀 (02-709-7817)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승인시가능	모든 권리 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상속,대리인	명의를이전이 아니므로 발생하

대리행사	본부승인시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의무	포함2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대리인 가맹본부 의 승인서 체결(3일 소요)	는 문제의 책임 은 계약자에게 있다.
------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계약 지역 내에서] 귀하가 [빨라쥬 델 프레도]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젤라또(아이스크림)전문점 젤라또 카페 중복되는 메뉴가 50% 이상일때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영업팀 (02-709-7817)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빨라쥬 델 프레도]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사전협의)	비고
10:00 ~ 23:00 (13시간)	일요일, 공휴일 정상 영업	문의: 영업팀 (02-709-781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일)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	----------	----------	----

2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감독 항목	감 독 절 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매장청결(4 항목)	방문 ⇒ 위생관리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월 / 1 회	본사영업팀
친절도(5 항목)	암행방문⇒주문⇒서비스,제품제조 확인⇒관리표 작성⇒완료	분기 / 1 회	
품질관리(7 항목)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월 / 1 회	
경영관리(4 항목)	방문 ⇒ 손익관리 비용 정보 공개 ⇒ 손익실적 분석 및 컨설팅 ⇒ 완료	분기 / 1 회	
운영관리(5 항목)	방문 ⇒ 운영관리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 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월 / 1 회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빨라쫄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빨라쫄 델 프레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 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 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인터넷, 경품 증정	가맹점 부담외 전액	광고 전체행사의 50%	1-계약기간 중 50% 점주부담 2-전체 프로모션 진행하기전 분담금 확정 3-가맹점사업자간의 총 매출액에 따른 비율에 의한다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개별 행사	매장 자체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2012년의 경우 행사 별로 가맹점사업자당 20~50만원 부담)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 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 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	----------	--	---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으며 가맹본부의 지원은 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영업비밀은 한국특허정보원의 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자는 가맹계약서 제 36 조 제 1항,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계약이 종료, 해지된 경우, 가맹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맹 계약 해지일로부터 직전 12개월간 가맹계약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매입한 제품 및 상품 매입 대금의 평균 2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 가맹계약서 제 36 조 제 2항, 제 4항 규정에 의하여 본 가맹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 해지일로부터 직전 12개월간 가맹계약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매입한 제품 및 상품 매입 대금의 평균 2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 가맹계약자의 점포 운영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기간 동안에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12개월로 환산 후 계산합니다.

-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천재지변에 의하여 가맹계약자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 하다고 가맹본부가 판단하는 경우
- 건물 전체의 부도 및 압류 등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양도되는 등 정상적인营业을 할 수 없다고 가맹본부가 판단하는 경우
- 가맹계약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营业을 할 수 없다고 가맹본부가 인정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비용
합 계		45일 내외	98,000~111,0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계약체결 14일전) - 가맹계약서 제공(계약체결 14일전)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21,000
가맹금 예치	해당사항없음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인테리어 : 38,500 설비:33,000~46,000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초도물품:5,500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기준 평수 : 33.058평방미터(m²)/10평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 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 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 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 구성	분쟁 해결 절차	비고
가맹점관리 담당임원 1, 외부 전문가 1	분쟁 해결 신청 → 접수 → 사실관계 조사(15일 내외) → 협의 및 결정	문의: 가맹본부 영업팀 (02-709-7817)

[상생협력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44-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 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전단지, 기념품 등의 판촉비용지원	초도발주금액에 10% 제품물량 지원	오픈일	초도금액의 10% 최대 200만원한도	
판촉장려금	가맹점 행사진행시 판촉물 지원	가맹본부가 지정한 공동행사 참여시	행사기간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 (POP, 포스터 등)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시	서비스교육, 위생관리,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수시로 매장방문하여 가맹점 운영에 전반적인 경영지도를 한다.	가맹본부 부담	문의 : 운영팀 (02-709-7820)
가맹점 사업자 요청시	신규인력, 메뉴교육 등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 운영팀 (02-709-7820)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빨라쫄 델 프레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메뉴 교육, CS교육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실습교육 이론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매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년 필수적 으로 이수
기타 교육	필요시 협의 후 실시	이론, 실습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빨라쫄 델 프레도]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신규 교육	56시간	1,1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24시간	262	문제점 발생시
특별 교육			점주협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당사가 운영중인 직영점은 2023 년 말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직영점의 명칭과 소재지

구분	직영점명	소재지	비고
1	HQ 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72 길 3 해태제과 1 층	
2	코엑스몰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몰 B1F H119	
3	동산의료원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내 지하 1 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당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은 주로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운영하고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고객점과의 접점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단위, 개월)

2023 년 직영점의 평균운영기간	비 고
약 6 년 4 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2023 년 직영점 연간 평균 매출액	비 고
250,597	본 매출은 POS 상 매출액을 근거로 작성 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OO팀(02-XXX-XXXX)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메뉴 리스트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구입강제품목 및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